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53
----------	--------

제출년월일 : 2010.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개정된 지원사업범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 조정(제2조)

-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일부 표현 변경

3.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0. 7. 22. ~ 8. 10.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0. 8. 17.)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한다.

제2조 본문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각급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삭제한다.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 중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7호로 한다.

4.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3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교부 받고자”를 “교부 받고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하며, “보조여부를”을 “보조 여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관할구역안에”를 “관할구역 안에”로 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부의하는”을 “회의에 올리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회고”를 “회의를 개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인”을 “명”으로 하며 “교육환경개선팀장”을 “교육기획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목적외로”를 “목적 외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지 할”을 “중지할”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 받은”을 “교부받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u>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있는 <u>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u>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u>」 <u>서울특별시 마포구</u> <u>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u>..... </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u>각급학교</u>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구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생략)</p> <p>2. <u>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u></p> <p>3. <u>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u></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 (신 설) (신 설)</p> <p>5. <u>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u></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u> <u>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u> <u>각 호</u>.....</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u></p> <p>(삭제)</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4. <u>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u></p> <p>5. <u>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u></p> <p>6. <u>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u></p> <p>7. <u>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현행	개정안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해당 연도..... </p>
<p>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p>③ 제2항의 보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 해당연도 ②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교부받고자 3.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③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p>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른 각 호..... 제6조에 따라 보조 여부</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p> <p>3. (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구분청 5급 이상 공무원 2인</p> <p>2. 구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1인</p> <p>3. 교육전문가 2인</p> <p>4. 기타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고 덕망있는 마포구민 5인</p>	<p>1. (현행과 같음)</p> <p>2. 해당 연도</p> <p>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p> <p>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관할구역 안에</p> <p>.....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1명</p> <p>... 11명</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각 호</p> <p>1. 2명</p> <p>2. 1명</p> <p>3. 2명</p> <p>4. 그 밖에 5명</p>

현행	개정안
<p>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동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④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p> <p>⑤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기능) (생략)</p> <p>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대상선정</p> <p>2. ~ 4. (생략)</p> <p>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p>	<p>제9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해당 연도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회의에 올리는</p>
<p>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p>	<p>제10조(회의 등) ① 연 1회</p>

현행	개정안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회</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u>교육환경개선팀장</u>으로 한다.</p> <p>④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u>비치</u>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② <u>회의를 개최</u>하고</p> <p>③ 1명 1명 <u>교육기획팀장</u></p> <p>④ <u>갖추어 두어야</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생략)</p> <p>1. 보조금을 교부 <u>목적외로</u> 사용한 때</p> <p>2. ~ 3. (생략)</p> <p>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p> <p>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u>중지</u> 할 수 있다.</p>	<p>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생략)</p> <p>1. <u>목적 외로</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p> <p>② <u>중지</u>할</p>
<p>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u>각호</u>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u>각 호</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p>

현행	개정안
<p>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u>교부 받은</u>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u>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u>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u>교부받은</u></p> <p>제14조(수당) <u>범위에서</u></p>